

**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**

1. 다산신도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육공원 내 시설 확충을 위해 제안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에 대해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 도서는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6. 3. 19.

남 양 주 시 장

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1.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가. 용도지역·지구·구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 - 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 - 다.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 - 1) 공간시설
 - 가) 공원(변경)
 -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3	공원	체육공원	다산동 6011 일원	10,448.7	증) 509.5	10,958.2	남양주시 고시 제2025-183호 (2025. 5. 8.)	정미한 변경

○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3	공원 (체육공원)	· 체육공원 구역 확장 - 면적 : 10,448.7㎡ → 10,958.2㎡(증 509.5㎡)	· 체육공원 내 시설 확충을 위한 구역 확장

나) 공공공지(변경)

○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5	공공공지	다산동 5610 일원 (다산동 6012)	11,899.4	감) 509.5	11,389.9	국토부해양부 고시 제2012-858호 (2012. 12. 6.)	경미한 변경

○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5	공공공지	· 공공공지 축소 - 면적: 11,899.4㎡ → 11,389.9㎡(감 509.5㎡)	· 체육공원3호 구역 확장에 따른 공공공지 축소

2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1) 용도지역·지구·구역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: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중 다.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 내용으로 같음(도면 포함)

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라.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마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바.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(변경없음)

붙임 1.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

2.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

3. 가구 및 획지·건축물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